



# 장애인 사법지원 절차 안내

2023. 10.

서울중앙지방법원

## I. 장애인 사법지원 대상 및 범위

### 가. 지원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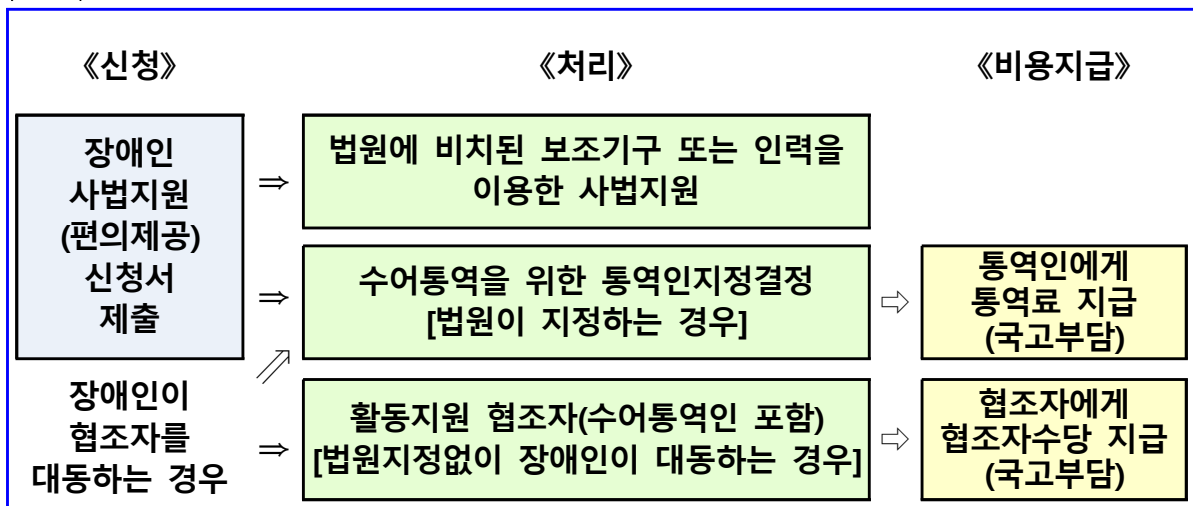
- ① 소송절차에 참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으로,
-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어도 무방하고,
- ③ 원고·피고 등 당사자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및 증인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
  - 「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20-2)」 제3조에 따라 방청인이 수어통역을 신청하는 경우 포함

### 나. 지원 범위

- ▣ 수어통역, 문자통역, 보청기 또는 음성증폭기, 독서확대기,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, 휠체어 등 이동을 위한 조치, 활동(이동)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,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

## II. 사법지원 신청 절차

### 가. 개요도





## 나. 신청절차

- ▣ 장애인 사법지원(편의제공) 신청서를 소송이 진행중인 담당 재판부에 제출
- ▣ 해당 재판부는 제공가능 한 지원조치를 파악하고, 필요여부에 따라 사법지원 여부를 결정함
- ▣ 신청인이 제출할 증빙서류
  - 법원에 비치(혹은 ‘대한민국법원’ 홈페이지)된 ‘장애인 사법지원(편의제공) 신청서’ 를 기재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,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
- ▣ 법원의 추가자료 제출요구
  - 법원은 사법지원의 필요성 및 제공할 편의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,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음
  - 신청한 내용대로 사법지원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, 필요성에 비하여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,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

## III. 안내서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⇨ [별지 1, 2] 참고

- ▣ ‘대한민국법원’ 홈페이지 》 대국민서비스 》 전자민원센터 》 재판지원 》 장애인사법지원 內 양식 참고

## IV. 사회적 약자 지원 협조자수당 지급

### 가. 개요

- ▣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여 사법서비스나 인적지원을 제공한 협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

### 나. 지급수당

- ▣ **2023년도 시간당 금액 : 15,570원** (보건복지부 결정 ‘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’ 기준)



- 지원 시간: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

## 다. 지급절차

- ‘지급의뢰서 및 확인서’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(‘지급의뢰서 및 확인서’ 양식은 [별지 3] 참고)
  -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‘확인서’는 지원 대상자(장애인 등)가 직접 작성하도록 함
-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조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함



## [별지1] 안내서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



### 재판지원

- 소송구조제도
-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
- 국선변호인선정제도
- 증인지원제도
- 장애인 사법지원**
- 법률용어 수어 +
-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안내

## 장애인 사법지원

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누가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?

고령으로 인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처럼,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. 장애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. 소송절차에 원고·피고·피고인과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, 증인·감정인·통역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어떠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?

신청인은 소송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. 수어통역, 문자통역, 보청기, 확대경,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, 판결문 등의 점자문서 제공, 보완·대체 의사소통 기기와 기구,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, 활동(이동)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,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###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?

소송이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에게 사법지원을 신청합니다.

### 신청인은 장애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?

법원은 사법지원의 필요성 및 제공할 편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,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인은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(편의제공)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###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가?

그렇지 않습니다.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## 양식

신청서 목록	다운받기
장애인 사법지원(편의제공) 신청서	<a href="#">다운받기 &gt;</a>
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	<a href="#">다운받기 &gt;</a>

###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

목록	다운받기
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	<a href="#">다운받기 &gt;</a>
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미지파일	<a href="#">다운받기 &gt;</a>
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점자파일	<a href="#">다운받기 &gt;</a>
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점자파일(한소네)	<a href="#">다운받기 &gt;</a>



## [별지2] 장애인 사법지원(편의제공) 안내서 및 신청서

### 장애인 사법지원(편의제공) 안내문

이 안내문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## ◎ 누가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

고령으로 인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처럼,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. 장애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. 소송절차에 원고·피고·피고인과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, 증인·감정인·통역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◎ 어떠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

신청인은 소송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. 수어통역, 문자통역, 보청기, 확대경,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, 판결문 등의 점자문서 제공, 보완·대체 의사소통 기기와 기구,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, 활동(이동)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,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#### ◎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

신청인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재판부에게 사법지원을 신청합니다.

#### ◎ 신청인은 장애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

신청인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. 법원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법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. 이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,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인은 법원에 비치된 ‘장애인 사법지원(편의제공) 신청서’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◎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가

그렇지 않습니다.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사법지원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

※ 본인의 장애 상태를 법원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질문지에  
답하여 앞면의 장애인 사법지원(편의제공)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 
다음 질문 중 본인의 장애 유형과 관계있는 질문에만 답하시면 됩니다.

#### [시각장애 관련]

가. 시각장애로 인해 글자를 읽거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다면,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  
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가까이서 보거나 돋보기를 이용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다. 읽을 수 있는 글자의 크기는  
( )이다.

① 법원(10p) ② 법원(20p)

③ 법원(30p) ④ 법원(40p)

2) 돋보기와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해도 일반적으로 글자를 읽기 어렵지만, 확대인쇄물  
은 읽을 수 있다. ( )

3) 점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. ( )

4) 전자파일을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, 가까운 곳에서 그러  
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. ( )

5) 시각장애로 인해 법원 청사 안팎을 다닐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. ( )

6) 기타(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.)

#### [청각장애 관련]

나. 청각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면, 다음 중 해당하는  
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일상대화가 잘 들리지 않지만, 가까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,  
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. ( )

2) 일상적인 말을 직접 듣기는 어렵지만, 보청기를 사용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, 말을 하는  
데에는 어려움이 없다. ( )

3) 소리를 듣기는 어렵지만, 수어를 이해할 수 있다. ( ) 글자를 읽을 수 있다. ( ) 구  
화를 배워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 ( )



- 4)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, 수어를 구사할 수 있다. ( ) 글자를 써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. ( ) 컴퓨터 자판을 쉽게 다룰 수 있다. ( )
- 5) 수어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. ( ) 글자를 통해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. ( ) 모두 필요하다. ( )
- 6) 기타(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.)

### [지체장애 관련]

다. 몸이 불편하여 재판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,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,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동에 큰 불편은 없다. ( )
- 2)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적절한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,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(☞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보조기구를 쓰시기 바랍니다).
- 3)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도와줄 보조인이 필요하다(☞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도움의 내용을 쓰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, 휠체어는 있지만 굴릴 힘이 없어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는 등).
- 4)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 재판받기가 어려우므로, 재판이 길어질 경우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(☞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몸 상태를 쓰시기 바랍니다).
- 5) 몸이 불편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내 의사를 잘 전달해 줄 보조인이 필요하다(☞ 여기에 해당하면 보조인을 함께 데려올 수 있는지, 만약 그렇다면 그 보조인은 누구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).

### [기타]

라.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 재판을 받는 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법원에 바라는 장애인 편의제공 서비스가 있다면 아래에 쓰시기 바랍니다.



### [별지3] 협조자수당 지급의뢰서 및 확인서

## 활동지원협조자 수당 지급의뢰서

수 신 :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재무계

사건번호 :

참석일자 : 2023. . . . :

위 사건에 관하여 (원고, 피고, 증인) ○○○의 활동을 지원한 협조자 ○○○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협조자수당 ○○만원을 지급 의뢰합니다.

은행	계좌 번호	예금주	비고

※ 협조자 본인의 통장이 아닌 타인의 통장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

붙임 : 협조자 신분증 사본 1부.

2023. . . .

○○법원 ○단독 판사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### 확 인 서

본인은 장애인복지법, 기타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또는 이와 비슷한 급여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2023. . . .

사법지원 대상자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